

경기도 공고 제2026-5977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6-5964(2026. 8. 14.)호에 따른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
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	처분근거
			당초	변경	
신호건설주 (홍민호, 여명순)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64번길 52 1층, 3층 (안양동)	건축공사업 (10-2412)	영업정지 (‘26.08.10. ~’26.12.09.)	영업정지 (‘26.08.10. ~’26.11.25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4조 (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)